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검토보고

의안 번호	720
----------	-----

2009. 2. 4.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제안자 : 박삼례 의원의 4인

## 2. 제정사유

2004년 3월 5일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되어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하였으며, 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관련 사업 그리고 장애인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함

나.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중 1/2을 장애인으로 함

다.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,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음.

라. 안 제7조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2회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.

마.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임

바. 안 제10조는 의견청취와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이번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서,

##### 조례구성은

○ 제1조 목적에서 제 14조 운영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##### 주요제정 내용은

- **안제1조**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목적을
- **안제2조**는 복지와 관련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
- **안제 3조에서 안제 5조**에서는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의 해촉에 관한사항을
- **안제 6조**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
- **안제7조**는 회의와 관련하여 정기회를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
- **안제8조**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는 규정을
- **안제9조**에서는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
- **안제10조에서 제11조**까지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는 규정을

- **안제12조**는 위원회에 출서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두고
  - **안제13조에서 제14조**까지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와 위원회운영과 관련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, 령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,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, 또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부합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함.

## **5. 관련법규**

-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